

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 방문상담일자 안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08.03.

경기도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 공시송달
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내용
1	김0숙	1995.03.06.	경기도 오산시 청학로173 번길 12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	취업지원서비스 진행을 위한 방문상담일자 의무 부과	1) 1차 출석통지서('26.7.20.), 2차 출석통지서('26.8.3.)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(사유: 폐문부재) 2)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할 것 3)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두절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됨

4. 공고 기간: 2026.08.03. ~ 2026.08.1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김희선(Tel. 031-8024-983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